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REDACTED]도급금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19. 선고 [REDACTED]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4,226,91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2024. 10. 17.까

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142,6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을 고려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각주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해당 부분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모두 『이 사건 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 "70대"에 아래 각주 2)를 추가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시험차량 3대를 포함하여 차량 70대에 대한 전장품 장착 및 케이블 포설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시험차량을 포함하여 74대에 대해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2021. 1. 6. 자 견적서(을 제1호증의 2)가 이미 이행이 완료된 차량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완성한 업무에 관한 피고의 제1심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경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같은 쪽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21. 1. 12.부터 2021. 2. 9.까지 일방적으로 원고가 제작한 물품을 반출해 간 후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되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인수증 작성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시험차 및 완성된 차량대금 등에 관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3,909,708원에서 선금금으로 지급된 348,767,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142,6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목	금액(원, 부가세 포함)
시험차 제작비용	28,215,000
완성된 차량대금	533,670,586

피고가 회수한 물품대금	279,361,348
원고가 제작했으나 피고가 회수하지 않은 물품대금	11,747,078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얻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10,915,696
	863,909,708

』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계약이 합의로써 해제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

여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합의해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가 '구매 및 용역 표준계약서', '부품 공급 및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피고가 생산하는 부품을 안정적으로 원고에게 공급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된 차량 물품은 특정 주문자인 피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부대체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부품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공급 부품은 별첨과 같다(제2조 제1항). 부품 주문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선 또는 구두로 선 청구 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3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할 부품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부품을 주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의 경우 부품리스트에 '사급, 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및 부품리스트에는 'MS Connector 일체와 전장품 자재'에 한해 피고가 공급하였음을 나타내는 '사급'이라는 표시와 함께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금액란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 부품은 모두 대금이 기재되어 있다(토클 스위치의 경우 피고가 보낸 사급자재목록에 누락되어 있어 사급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그 대금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한 부품은 MS Connector 일체와 전장품 자재에 한정되고, 그 외 부품은 원고가 직접 구입하여 물품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및 원고가 단가조정 협상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부품 대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대금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만드는 물품에 필요한 부품을 피고가 공급하였다면, 이 사건 계약서를 포함하여 각 견적서에 부품 대금을 책정해서 계약금액에 반영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가 모든 부품을 공급한 것이라면

계약대금에서 부품대금이 제외되어 있어야 함이 일반적이거나 이 사건 계약대금에는 부품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자신이 구매한 부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 반해, 피고가 사급자재로 원고에게 공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부품을 통해 물품을 제작하고, 제작된 물품을 가지고 피고의 공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피고의 차량에 제작한 물품을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가 단순히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피고의 차량에 그대로 설치하는 업무라면, 원고가 용역만을 제공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 부품을 원고의 공장에 제공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부품을 공급하였다면, 2021. 1. 12.부터 2021. 2. 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물품인수인계 업무 이후 원고 측에 남은 부품에 대해 피고가 반환요구 등 조치 없이 그대로 원고의 지배하에 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전장 제어 및 배선회로 설계도면(갑 제15호증)'을 기준으로 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케이블 등 부품을 가공하여 물품을 만들어 정선BOX 및 컨트롤러 제작, 배선하네스 설계변경 및 신작을 완료하고 이를 피고 차량에 장착하고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바, 원고가 만든 물품은 피고 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작한 부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가 회수하지 않은 물품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인수증 교부 당시인 2021. 1. 12.경에는 피고가 계약상대방을 다른 업체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수증 등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2021. 1. 12. 피고에게 배터리 등 물품을 인계하면서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인수증에는 '상기 품목을 [redacted] (원고)에서 작업을 완료하여 설치를 하여야 하나 귀사(피고) 업체변경으로 반품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문구 아래에 원고의 이사 [redacted] 직접 서명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인수증 작성 무렵 피고로부터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 변경하겠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의 업체변경으로 물품을 반환한다는 이 사건 인수증을 작성한 이후 2021. 2. 말경까지 물품인수인계를 이행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나 물품반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인수증 작성 이후 자신이 작업하던 물품을 포함하여 부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업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적정한 단가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21. 1. 6.경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21. 1. 12. 이 사건 인수증이 작성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초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견적서의 작업단가 7,146,437원이 그 후 6,009,962원(2020. 12. 29. 자 견적서), 4,632,432원(이 사건 견적서)으로 계속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견적서상 일부 세부항목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합의해지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믿을만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서면에 의한 해지 및 정산합의가 없었으므로 해지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인수증 및 견적서 등을 통해 서면에 의한 해지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된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더라도 원고가 이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된 차량과 피고를 위해 제작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21. 1. 6. 자 견적서에 따라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정산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외 정산합의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합의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2021. 1. 6. 자 견적서에 '시험차 3대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항목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역과 일부 다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물품과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더구나 2021. 1. 6. 자 견적서는 그 명칭과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와 제작단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물품의 단가를 제시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견적서에 원고와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어 해당 자료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정산에 관한 종국적인 처분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21. 1. 6. 자 견적서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물품에 관한 정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2021. 1. 6. 자 견적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행을 완료한 차량은 시험차를 포함하여 70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21. 1. 6. 자 견적서에 수량이 '74대'로 기재된 점에서도 위 견적서가 이미 이행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당초 원고가 완료해야 할 차량이 150대였으므로 미이행 차량은 80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향후 제작할 차량으로 74대를 기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완성한 차량이 시험차 포함 70대라고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74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피고는 원고가 완성한 차량과 작업 중인 차량을 합하여 74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정산결과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거나 원고에게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피고가 원고의 작업완료 차량 대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③ 2021. 1. 6. 자 견적서가 정산서라는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7,930,164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제1심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2021. 3. 9. 자 및 2021. 3. 18. 자 계약이행 및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답변을 한 적도 없다. 더구나 원고가 피고에게 2021. 1. 6. 자 견적서를 송부한 이후 그에 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도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부분은 그것이 피고에게 이익이 됨이 명백하므로(원고가 작업을 완료한 차량 70대의 경우 피고가 해당 부분을 인수하였다), 원고가 작업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가 작업 완료한 차량 70대(시험차량 3대 포함)의 대금

(1)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20. 5. 27.경 원고와 피고가 시험차를 28,215,000원(= 부가세 별도로 25,650,000원 $\times$ 1.1)에 제작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시험차 제작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2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12.경까지 67대분의 정션BOX와 컨트롤러 제작 및 배선 하네스 설계 변경과 신작, 70대(시험차량 3대 포함)에 대한 전장품 장착 및 케이블 포설작업을 완료한 사실, 그 대금은 정션BOX와 컨트롤러 제작 165,631,303원(= 67개 $\times$ 2,472,109원), 배선 하네스 개조 및 신작 171,501,776원(= 67개 $\times$ 2,559,728원), 전장품 장착 및 케이

블 포설 작업 148,022,000원(= 70개 × 2,114,600원)에 각 부가가치세는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부분 대금은 합계 533,670,586원(= 485,155,079원(= 165,631,303원 + 171,501,776원 + 148,022,000원) × 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험차 3대를 포함하여 완성된 차량 70대의 경우 2021. 1. 6. 자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 4,632,432원을 기준으로 그 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견적서의 작업단가 7,146,437원을 6,009,962원(2020. 12. 29. 자 견적서), 4,632,432원(2021. 1. 6. 자 견적서)으로 계속 감액하여 제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완성한 70대 차량에 대한 단가를 2021. 1. 6. 자 견적서 기재 단가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해당 견적서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금변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업을 완료한 차량 70대(시험차량 3대 포함)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561,885,586원(= 28,215,000원 + 533,670,5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작업 완료한 물품의 대금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감정인 [REDACTED] 대한 감정결과, 감정인 [REDACTED]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가 수

거해 간 부품의 대금은 별지1 기재 목록과 같이 합계 279,361,348원(= 부가세 별도로 253,964,862원 $\times$ 1.1)이고, 원고가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수거해 가지 않은 부품의 대금은 별지2 기재 목록과 같이 합계 11,747,078원(= 부가세 별도로 10,679,162원 $\times$ 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품 대금으로 합계 291,108,426원(= 279,361,348원 + 11,747,0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고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으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금으로 348,767,1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대금으로 합계 504,226,912원(= 작업완료 차량 70대에 대한 대금 561,885,586원 + 부품 대금 291,108,426원 - 기지급금 348,767,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6.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4. 10.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

1) 피고는 2024. 4. 24. 자 준비서면으로 제1심판결 이후 2022. 4. 21.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8,343,53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을 제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한 위 돈이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변제로써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가 변제 항변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1

<원고가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가 수거해 간 부품 목록>

순번	물품명	단가(원)	수량(개)	대금(원)
1	솔레노이드& 인디케이터 & CTIS	281,625	41	11,546,625
2	압력 게이지 판넬	9,000	44	277,200
3	모니터 케이블	9,375	80	750,000
4	룸 LAMP	9,375	218	2,043,750
5	외부 AIR COMP	9,000	74	666,000
6	PTZ POWER	12,500	73	912,500
7	특장 ENG CABLE	351,375	34	11,946,750
8	특장 REAR 램프 배선	365,625	32	11,700,000
9	AUDIO ANT Cable	8,250	77	635,250
10	AUDIO ANT	8,250	47	371,250
11	BATTERY (B+)	14,250	56	798,000
12	관통판넬 TO ENG1	18,000	73	1,314,000
13	관통판넬 TO 메인정선 BOX	179,250	13	2,330,250
14	특장 IP 배선	124,688	78	8,990,005
15	특장 REAR 램프 배선	365,625	45	8,226,563
16	관통판넬 TO ENG2	30,750	69	1,273,050
17	MAIN 정선박스	1,161,280	55	57,831,744
18	ENG1 정선박스	297,890	34	10,128,260
19	ENG2 정선박스	503,550	25	12,588,750
20	BRACKET - MONITOR	19,200	85	1,632,000
21	BRACKET - PTZ	19,200	90	1,728,000
22	BRACKET - CAMERA	14,100	80	1,128,000
23	ENG1 정선박스	297,890	49	14,596,610
24	ENG2 정선박스	503,550	55	27,695,250
25	DASH ASS'Y	179,250	1	179,250
26	SOL ASS'Y	281,625	1	281,625
27	실내배선 ASS'Y	108,385	1	108,385
28	모니터 케이블	9,375	1	9,375
29	PTZ POWER	12,500	1	12,500
30	미션쿨러 2P TO 2P	9,375	9	84,375
31	MAIN 정선박스(완제품)	1,161,280	29	33,677,120
32	BODY TO MAIN_4P	18,000	65	1,170,000
33	BODY TO MAIN_4P	30,750	19	584,250
34	BODY TO MAIN_4P	63,000	67	4,221,000
35	BODY TO MAINTAIN(37P)	67,500	64	4,320,000
36	MAIN 컨트롤판넬(상판)	371,575	49	18,207,175
합계				253,964,862

별지2

<원고가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수거해가지 않은 부품 목록>

순번	물품명	단가(원)	수량(개)	대금(원)
1	솔레노이드& 인디케이트 & CTIS	281,625	34	1,915,050
2	실내등 & FAN & 스피커 & 후방안개등	108,385	67	3,099,811
3	ABS CABLE 설계변경	365,625	79	2,888,438
4	ENG 설계변경	351,375	79	2,775,863
합계				10,679,162

끝.

열람용

정본입니다.

2024. 10. 18.

수원고등법원

법원사무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